

## 技術共濟組合設立의 提案

An Organizing Proposal of Financial Cooperatives  
for Professional Engineer's

金 峴 根\*  
Suen Guen, Kim

### 主要內容目次

- |                       |                           |
|-----------------------|---------------------------|
| 1. 머리말                | 3.5.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줄거리        |
| 2. 技術共濟組合設立 促求의 動機    | 3.6. 大韓保證保險(株)의 概要        |
| 3. 各種共濟組合과 共濟會에 關한 現況 | 3.7. 工業發展法第25條共濟事業團體에 關하여 |
| 3.1. 現況概要             | 4. 建設共濟組合의 1985年度 業務概況    |
| 3.2. 信用保證基金의 줄거리      | 5. 技術共濟組合設立 提案의 主要內容      |
| 3.3. 相互信用金庫法의 줄거리     | 6. 맺는말                    |
| 3.4. 建設共濟組合法의 줄거리     | 7. 主要參考資料 및 文獻리스트         |

### 1. 머리말

(社)韓國技術士會의 定款第1條(目的)을 再吟味하기 위해 적으면 「이 法人은 技術士業務의 遂行能力을 개발 증대하고 海外技術과의 交流向上을 期함으로써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技術士業務의 遂行能力을 進展시키는 데 阻害하는 要因으로서 資金의 問題가 있다. 이 資金의 問題는 技術士自身이 其間, 解決하지 못하여 業界에서는 他力에 依存하는 경우가 殆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他力은 高金利私債(急錢必要時에 限해서)나, 銀行金融의 두가지루트로 하는 專擔重役이 있어서 그가 處理해 왔고, 이에 對하여 制度的인 信用金融을 活用한다는 問題에 이르러서는 輕視 或은 等閑視하여 왔던 것이 事實일 것이다. 또, 保證保險은 信用保證基金이나, 大韓保證保險(株)의 두가지만 利用하던 充足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는지 모르겠지만, 技

術士信用保證制度, 技術士責任賠償保險制度等の 新構想까지 하게 되던은 새로운 信用金融을 取扱하는 技術士를 위한 技術士가 直接營爲하는 技術士의 俗稱 “技術共濟組合” 같은 것이 머리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技術士의 財産은 元來, 蓄積된 知識이고 또, 技術的經驗이므로 이러한 것은 一般銀行이나 既存制度金融에서는 融資를 받고자 할 경우 擔保가 될수 없고, 그 때문에 必要로하는 資金이 確保되지 못하기 때문에 優秀한 技術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活用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點은 技術士自身이 體驗하면서도, 信用金融에 對한 法律常識에 稀薄하여 其間, 積極적으로 設立案을 提起하여 推進코자 힘쓰는 者가 別로 없었기에, 筆者가 그 基本構想을 적어보기에 이르렀다.

技術共濟組合의 設立構想으로는 技術士個人과 技術用役業體 即, 個人信用稜와 出資業體의 兩面活用이라는 特性을 가진 特殊法人設立을 要望

\* 土木(港灣 및 海岸)技術士, 明知大工大講師

하여 筆者個人構想을 적으니, 元老·先輩會員諸兄의 批判과 聲援 및 贊同을 얻고자 합니다.

## 2. 技術共濟組合設立 促求의 動機

### 2.1. 設立案의 背景

(1) 政府의 技術先進國進入 目標와 高度의 社會福祉 國家建設施策에 副應하는데 있다.

(2)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技術士 專用金融機關(所謂第二金融)인 “技術共濟組合”의 設立(法的)運營으로 技術士 各個人의 信用稜, 技術用役 및 技術士業務를 위한 各種保證業務, 더우기 技術士信用保證, 技術士責任賠償保證과 엔지니어링業務上 必要한 資金의 自體機關에 의한 信用融資等の 惠澤을 招來케 하는데 있다.

따라서 特殊法人의 組合이 되도록 立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技術用役의 歷史가 짧고 中小企業中에서도 零細한 資本으로 漸進的으로 育成發展되고 있으나, 西歐先進國水準과 거의 같은 信用保證과 金融活用이 技術士를 위한 技術士의 것을 技術士단의 힘으로 運用할 만큼의 資本力形成을 具備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 2.2. 設立의 必要性

(1) 1985年度 國內外 受注實績이 3,629 億원(詳細한 것은 表-2.1. 要參照)에 이르는 만큼 技術用役業界가 育成되었고, 自體힘에 의한 自力으로 運營되는 信用金融機關이 必要하기에 이르렀다.

표-2.1.

년도별 技術用役受注實績 대비표('83/'84/'85)

(단위 : 천원)

업종별	년도별 국내· 외별	1983년도(A)		1984년도(B)		1985년도(C)		증가율(%)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C/A	C/B
계	국내	4,825	177,768,865	6,334	233,132,834	8,091	274,110,144	54.2	17.6
	국외(US\$)	105	108,132,770 (86,506,216)	137	62,991,449 (51,652,988)	146	99,772,144 (88,797,208)	△7.7	58.4
	계	4,930	264,275,081	6,471	284,785,822	8,267	362,907,352	37.3	27.4
산업설비	국내	526	83,550,113	497	109,763,325	526	106,694,525	27.7	△2.8
	국외(US\$)	62	69,257,965 (55,406,372)	52	48,373,965 (39,666,312)	68	60,682,154 (54,007,117)	△12.4	25.4
	계	588	138,956,485	549	149,429,637	594	160,701,642	15.6	7.5
종합건설	국내	686	37,654,972	741	43,159,297	734	47,333,822	25.7	9.7
	국외(US\$)	3	549,676 (439,741)	3	365,000 (299,300)	1	38,995 (34,705)	△92.9	△89.3
	계	689	38,094,713	744	43,458,597	735	47,368,527	24.3	9
전문기술	국내	3,472	55,943,978	4,484	79,398,191	5,929	117,677,136	110.3	48.2
	국외(US\$)	40	38,325,129 (30,660,103)	81	14,251,733 (11,686,421)	107	39,050,995 (34,755,386)	1.9	174
	계	3,512	86,604,081	4,565	91,084,612	6,036	152,432,522	76	67.4
개인	국내	141	619,802	612	812,021	902	2,404,661	288	196.1
	국외(US\$)	—	—	1	1,165 (955)	—	—	—	△100
	계	141	619,802	613	812,976	902	2,404,661	288	195.8

出處 : 韓國技術用役協會

표-2.2.

技術用役業에 從事하는 人力保有現況表

1985. 12. 31 基準

(단위 : 명)

구 분 업 종	고급기술자		기 술 자		기 능 사	관 리 직	계
	기 술 사	기 타	기사1급	기 타			
총 계	1,261 (1,261)	1,529 (1,500)	6,250 (3,702)	10,631 (5,241)	46,551 (6,656)	14,887 (3,984)	81,109 (22,344)
산 업 설 비	354 (354)	583 (558)	1,562 (1,500)	2,176 (2,176)	17,564 (2,299)	8,161 (1,410)	30,400 (8,297)
중 합 건 설	264 (264)	175 (175)	583 (583)	518 (518)	528 (528)	653 (653)	2,721 (2,721)
전 문 기 술	591 (591)	720 (740)	4,065 (1,583)	7,775 (2,429)	28,344 (3,750)	6,005 (1,855)	47,500 (10,948)
개 인 기 술	52 (52)	31 (27)	40 (36)	162 (118)	115 (79)	68 (66)	468 (378)

※ ( ) 기술용역업체 근무하는 순수인력

註記 : (1) 1983. 12. 31. 現在의 人力保有現況은 다음과 같다.

고 급 기 술 자		기 술 자		기 능 사	기 타	합 계
기 술 사	기 타	기사1급	기 타			
797	1,406	2,660	3,813	5,925	8,283	22,884

出處 : 韓國技術用役協會

여기에 從事하는 人力은 1985 年末 現在 8 萬餘名에 達하는 技術用役의 勞動力을 保有하게 되었다. 即, 표-2.2.에서 보듯이 技術用役業界에 從事하는 人力이 1983 年과 對比할때 總人力에서는 約 4 倍가까이 急伸張한 것을 人力面에서 알 수가 있다.

또 保證保險에 對한 付保額上의 保證保險手數料가 年間, 約 15 億원(1985 年度)이었다고 用役協會實務者는 말하고 있다.

(2) 一般的인 入札 或은 履行保證保險業務에서 脫皮하여 「技術瑕疵補充保證」이나 「技術士賠償責任保險(損害賠償保證保險)」과 같은 技術用役業務上의 特殊保證業務는 技術士의 技術判斷을 要하는 特殊保證保險業務의 開發이 促求되고 있다.

(3) 個人技術用役의 提高와 더불어 技術士各個人의 信用業務와 技術士各個人을 技術士全體의 組合結成을 통한 技術士信用保證과 融資의 必要性이 增加傾向에 놓여 있다.

參考로 적으면 日本에는 技術士 協同組合이 1976 年 6 月에 結成되어 技術士에게 信用金融上

의 惠澤을 주고 있다.

(4) 危險負擔이 一般建設工事に 比해서 훨씬 적은 技術用役(産業設備의 一部를 除外)의 金融信用保證의 料率을 現行制度의 各種 保證保險보다 훨씬 低率化로서 技術用役業界의 資金負擔을 極小化해서 零細資本의 資本力增大에 寄與케 한다.

(5) 國家가 技術力을 保證하고 있는 技術士에게 信用金融의 새 制度를 통한 保證으로 資金活用面에서 對內外的으로 公信力的 增大가 切實하게 要請되고 있다.

2.3. 技術共濟組合에 의한 期待效果

(1) 技術士個人信用稷과 信用融資惠澤을 받을 수 있는 새金融機關에 加入權이 생기므로서, 現在까지 技術士會에 未加入한 資格保有者 約 2 千名의 追加加入으로 高級技術人力의 組織的인 活用強化로 國家의 科學技術人力 需給計劃에 더욱 더 이바지하게 된다.

(2) 技術士業務의 遂行能力的 向上 및 開發을 保有技術力에 信用保證金融의 擴大活用으로 그

促進이 加一層 增大케 된다.

(3) 資金의 圓滑한 支援活用을 받는 技術士의 果敢한 業務遂行으로 技術의 質의 水準向上과 技術士全體가 組合을 통한 組織力으로 危險負擔을 共同責任지며 技術上의 어떠한 瑕疵發生이라도 極小化하도록 할 수 있다.

(4) 技術用役業務가 制度的인 專用信用金融의 活用擴大로 因해 受注基盤이 安定化하므로서 技術輸出上 國際的인 信賴도가 倍增하여 輸出增大의 持續 및 增大化가 促進되어 國家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

(5) 既存의 信用保證機關에 拂込하였던 保證手數料가 新規組合으로 轉入되므로서 새로운 資本形成과 技術士의 出資基本財産과 더불어 廻轉資金化되어 資金融通이 圓滑해지고 加一層 貯蓄增大에 이바지 할 수가 있다.

(6) 制度的인 信用金融의 活用으로 技術士의 社會的·經濟的 優待等の 一環으로 實地的인 惠澤을 共有할 수 있게 된다.

### 3. 各種共濟組合과 共濟會에 關한 現況

#### 3.1. 現況概要

特殊法人으로 된 組合은 建設共濟組合, 電氣工事共濟組合, 軍人共濟會等 3個法이 있고, 政府各部處傘下에는 在團法人으로 표-3.1.과 같이 各種共濟團體가 社會福祉增進을 위한 共濟事業만 營爲하고 있고, 保證保險業務는 建設共濟組合과 電氣工事共濟組合 뿐이다.

이외에 信用金融을 取扱하는 法으로는 信用協同組合法(1972. 8. 17. 法第 2338 號制定公布), 信用保證基金法(1974. 12. 21. 法第 2695 號制定公布), 相互信用金庫法(1972. 8. 2. 法第 2333 號), 과 새마을金庫法(1982. 12. 31. 法第 3622 號制定公布) 등이 있다. 다음 章에서는 技術共濟組合法草案에 資할 既存法の 줄거리를 적는다.

표-3.1. 各種共濟組合法 및 共濟會리스트(SGK)

法 名 稱	法律番號	制定公布日	關 聯 法 名 稱	備 考
建設共濟組合法	1382	1963. 7. 31.	建設業法	(1986. 6現在) 現資本金 1880餘億원)
電氣工事共濟組合法	3570	1982. 11. 29.	電氣工事業法	韓國電氣工事協會 大韓電氣協會
軍人共濟會法	3698	1983. 12. 31.	軍人事法 및 軍務員 人事法	
社團法人 名 稱	設立年月日	資 本 金	主 事 業 種 目	備 考
大韓敎員共濟會				文敎部산하
大韓消防共濟會				內務部 "
大韓地方行政共濟會				"
大韓專賣共濟會				財務部산하
遞信共濟組合				遞信部산하
韓國電氣通信工事共濟會	結成準備中			動資部산하
海 港 會				海運港灣廳산하

※ 새마을金庫法 : 1982. 12. 31. 制定公布됨. 內務部소관임.

#### 3.2. 信用保證基金의 줄거리

信用保證基金(1974. 12. 21. 法律第 2695 號制定公布)의 業務開發部가 밝힌 內容을 발췌 紹介한

韓國技術士會誌

다(한국기술誌 通卷第 6 輯 71~73面에서)

##### 3.2.1. 信用保證制度의 意義

信用保證制度는 物的 擔保力이 微弱한 企業이 金融機關이나 혹은 그밖의 經濟主體로부터 借入

을 행하고자 할 때 그 債務의 償還을 信用保證基金이 保證해 주는 制度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信用保證基金이 借入하는 企業의 債務에 대하여 그 償還을 債權者에게 保證하고 債務者가 債務를 불이행할 경우 債務者를 대신하여 그 債務의 償還을 약속하는 制度이다.

즉, 企業이 他人으로 부터 資金을 調達함에 있어서 資金의 供給者인 金融機關 등에서 要求하는 物的擔保를 提供할 能力이 不足하여 企業이 必要로 하는 資金을 融資받지 못하는 경우, 비록 物的擔保能力은 微弱하나 企業의 經營能力과 事業性 및 成長可能性 등으로 보아 信用이 있다고 判斷될 경우에 信用保證基金이 信用을 保證하여 줌으로써 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經濟社會에 信用秩序를 確立함으로써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獨自의 機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金融政策의 補完制度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信用保證制度는 信用保證에 의하여 이루어진 金融機關의 融資를 可能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企業의 經營能力과 發展可能性을 評價하는 것은 물론 企業의 發展을 위한 企業에 對한 經營診斷 및 經營上의 相談과 指導 등 附帶的인 役割을 擔當하여 企業發展의 架橋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一方 金融의 效率化를 가져와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바람직한 信用結合關係를 形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外形的인 經濟發展에 相應하는 經濟構造의 內實化에 寄與할 수 있도록 信用社會의 具現을 先導하기도 하는 것이다.

### 3.2.2. 信用保證基金의 業務概要

이러한 信用保證制度가 우리나라에 導入된 것은 1961年 8月 信用保證準備金制度를 實施하여 우선 中小企業銀行에서 信用保證業務를 代行해 오다가 信用保證制度의 確立을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걸친 立法措置를 거치면서 發展하여, 1976年 6月 1日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여 信用保證基金이 特殊法人으로 創立됨으로써 信用保證業務를 專門的이고 本格的으로 取扱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1983年 末 현재 全國의 27個 支店에서 取扱한 信用保證規模를 보면 19,035個 業體에 1兆 3,102億원의 保證殘額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信用保證의 主要內容을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保證對象

信用保證은 擔保力이 微弱한 企業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企業으로는 法人企業은 물론 個人企業 以外에도 이들 企業의 團體(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말함)까지 包含하여 保證對象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寄與도가 높은 部門을 重點적으로 支援하여 保證運營의 效率을 높이고자 모든 企業을 對象으로 하지 아니하고 製造業을 위시하여 14個 業種으로 制限하고 있다. 즉, 鑛業, 製造業, 電氣가스業, 建設業, 都賣業, 小賣業, 運輸保健業, 技術用役事業, 設計製圖事業, 測量事業, 觀光事業, 醫療保健業, 修繕業, 海外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企業에 限하고 있으며 특히 技術用役事業은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業※으로서 科學技術處에 技術用役業者로 登錄한 “플랜트엔지니어링用役業”, “綜合建設技術用役業”, “專門技術用役業”을 말한다.

※ 信用保證基金法施行令第2條〔營業의 範圍〕

#### 나. 保證限度

信用保證은 企業의 信用을 保證함에 따라 장래에 發生할지도 모를 企業의 危險을 引受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信用保證의 對外公信力이며 財産의 基礎가 되는 基本財産(資本金)의 健全한 管理를 期하기 위하여 危險負擔을 分散시키고, 또한 保證運營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企業에게 保證의 利用機會를 부여하기 위하여 同一企業當 保證의 最高限度를 設定하고 있다.

즉, 大企業: 10億원

中小企業: 8億원(輸出支援金融인 경우에는 10億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國民經濟上 保證支援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專業 및 資金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同一企業當 保證限度를 超過하여 支援될 수 있도록 特別限度를 指定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면,

① 防衛産業資金

② 海外建設支給保證

③ 中小企業協同組合에 대한 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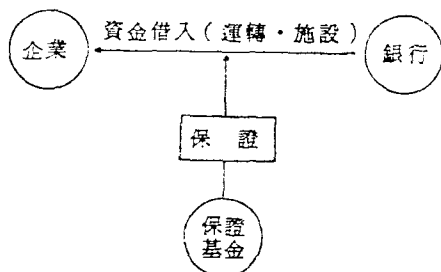
- ④ 會社債의 發行에 따른 保證
  - ⑤ 中小企業 近代化 事業資金 및 部品國産化를 위한 施設資金 貸出
  - ⑥ 에너지 節約을 위한 新技術開發 및 新技術의 企業化資金등이라 할 수 있다.
- 다. 保證種類  
 信用保證의 種類는 다음의 表와 같이 企業의 表. 信用保證의 種類

1. 間接金融에 대한 保證	{ 對銀行保證 { 對第2金融圈保證	{ 貸出保證
		{ 支給保證의 保證
2. 直接金融에 대한 保證	.....	社債保證
3. 企業間 信用에 대한 保證	.....	어음保證(支給어음, 받을어음, 擔保어음)
4. 納稅에 대한 保證	.....	納稅保證(國稅, 關稅, 地方稅)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間接金融에 대한 保證을 對銀行保證과 第2金融圈에 대한 保證으로 大別할 수 있다. 對銀行保證에 있어서도 貸出保證은 企業이 銀行으로 부터 貸出 또는 給付를 받음으로써 銀行에 대하여 負擔하는 金錢債務에 대한 保證으로서, 企業經營에 所要되는 資金의 外部調達源으로 가장 보편적인 方法이 銀行借入金인 만큼 保證種類중에서 主宗을 이루고 있다.

支給保證의 保證은 銀行이 企業의 債務를 保證하여 그 企業이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銀行이 代拂함으로써, 企業이 銀行에 負擔하게 되는 償還義務를 다시 信用保證基金에서 保證하는 것으로 被保證의 性格으로 把握될 수 있다. 이 支給保證의 保證은 外國銀行의 國內支店, 또는 第2金融圈등에서 企業에 資金을 貸出하는 경우에 市中銀行의 支給保證書를 擔保로

表. 貸出保證 흐름圖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거의全般에 達하고 있다. 이는 外國의 信用保證制度의 運營이 銀行의 貸出保證에 局限되어 있는 것에 比하면, 우리나라 保證制度의 特徵과 發展相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는 것으로서 信用保證制度를 導入하고 있는 17個國중에서 가장 效率의이고 獨創的인 制度로서 國內外的으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要求하고 있어 市中銀行이 이에 支給保證을 할 때 支給保證의 保證이 많이 活用되고 있다.

그러나 支給保證의 保證은 企業으로 하여금 保證料의 二重負擔(銀行에 支拂하는 保證料과 信用保證基金에 負擔하는 保證料)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직접 貸出保證, 第2金融保證, 納稅保證등을 利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第2金融保證은 企業이 第2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 貸出(어음割引 및 買入包含)등을 받음으로써 第2金融機關에 대하여 負擔하는 金錢債務에 대한 保證으로써 貸出保證과 比較하여 貸出取扱機關이 상이하고 保證對象企業을 中小企業에 局限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그 性格이 대동소이하다.

第2金融保證에 있어서의 第2金融機關은 廣義의 金融機關에 包含되는 金融會社로서 一般的으로 銀行以外の 金融機關을 말하며, 短資會社와 綜合金融會社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農水産業分野의 企業資金을 取扱하고 있는 農漁村開發會社, 農業協動組合, 水産業協同組合, 畜産業協同組合등과 保險會社,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가 있다.

施設貸與保證은 企業이 施設貸與會社 및 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부터 施設, 機械, 器具등을 貸與 또는 供給받음으로써 그들에 대하여 負擔할 施設貸與契約에 의한 金錢債務에 대한 保證을 말

한다.

直接金融에 대한 保證制度인 社債保證制度는 信用력이 있는 企業으로 하여금 會社債의 發行을 통해 中長期資金을 調達하여, 企業의 體質改善과 規模의 擴大를 圖謀하고 安定的인 成長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制度로서, 企業이 發行하는 會社債의 元利金支給에 대하여 保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通貨金融에 有關한 保證 以外에 通貨增發을 隨伴하지 않는 非인플레이의 手段에 의하여 企業間的 信用去來를 圓滑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保證을 實施하고 있다.

라. 履行保證과 保證料率

企業이 政府·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法人 또는 이들과 契約이 締結된 原事業者에 對하여 建設工事契約, 物品納品契約, 用役提供을 위한 契約時에 納付하여야 할 各種保證을 대신할 수 있다.

即, 入札保證金, 契約保證金, 差額保證金, 支給保證金, 瑕疵保證金 等이다.

企業의 規模에 關係없이 모든 企業들이 10 億 원 範圍內에서 信用保證을 받을 수 있다.

保證料로는 中小企業의 경우에 保證받는 金額에 대해서 年 1%이고 大企業의 경우에는 年 1.5%를 받고 있다.

### 3.3. 相互信用金庫法の 줄거리

(1972年8月2日)  
(法律第2333號)

改正 1975.7.25 法2779號

※ 全文 41 條와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고, 여기서 參考할 條項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庶民의 金融便宜를 도모하고 貯蓄을 增大하기 위하여 相互信用金庫를 育成하여 이를 合理的으로 規制함으로써 信用秩序의 確立에 寄與함과 아울러 去來者를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법에서 “相互信用稷業務”라 함은 一定한 口座數와 期間 및 金額을 정하고 定期的으로 稷金을 納入하게 하여

口座마다 抽籤·入札등의 方法에 의하여 稷員에게 金錢의 給付를 約定하여 행하는 稷金의 受入과 給付金의 支給業務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信用賦金業務”라 함은 一定한 期間을 정하고 賦金을 納入하게 하여 期間의 中途 또는 滿了時에 賦金者에게 一定한 金錢을 給付함을 約定하여 행하는 賦金의 受入과 給付金의 支給業務를 말한다.

第3條 (相互信用金庫의 形態) 相互信用金庫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또는 株式會社로 한다.

第5條 (相互信用金庫의 資本金) ①相互信用金庫의 資本金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른 金額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있어서는 5千萬圓
2. 서울特別市 및 釜山市 이외의 市와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3千萬圓
3. 前 各號이외의 地域에 있어서는 1千 5百萬圓
4. 第11條 第1項第3號의 業務만을 행하는 때에는 1千 5百萬圓.

※ 以下省略(②~⑤)

#### 第2章 業務

第11條 (業務) ①相互信用金庫는 營利를 目的으로 組織的·繼續적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1. 相互信用稷業務.
2. 信用賦金業務.
3. 割賦 償還方法에 의한 小額信用 貸出.
4. 稷員 또는 賦金者에 대한 어음의 割引.
5. 前各號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業務.

②前項 各號의 業務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財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할 수 있다. (1975.7.25 本項新設)

第12條 (同一人에 대한 給付등의 限度) 相互信用金庫는 同一人에 대하여 資本金과 積立金 기타 剩餘金의 合計額의 100分の 5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給付·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을 할 수 없다.

第13條 (稷金 및 賦金의 受入 限度) 相互信用金庫는 資本金과 積立金 기타 剩餘金의 合計

額의 15倍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를 초과하여 稷金 및 賦金을 受入할 수 없다.

(1975. 7. 25 本條改正)

第14條 (給付金과 貸出金の 限度) ①第11條 第1項第2號의 信用賦金에 있어서의 給付金の 總額은 受入한 賦金總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第11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小額信用貸出과 어음 割引의 總額은 資本金과 積立金 기타 剩餘金の 合計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額이하를 合한 金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15條 (支給準備資産의 保有) 相互信用 金庫는 受入한 賦金總額의 100分の 10이상에 相當하는 支給準備資産으로 現金, 金融機關에의 預金,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相互信用保險基金管理機關에의 預託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을 保有하여야 한다.

第16條 (利率等의 決定) 相互信用 金庫는 그 業務에 따른 受入 및 支給의 利率·割引率 및 手數料를 財務部長官이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정한 最高限度의 범위안에서 自律적으로 결정한다.

第17條 (借入의 制限) ①相互信用金庫는 資本金과 積立金 기타 剩餘金の 合計額을 초과하여 借入을 할 수 없다. 다만,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相互信用金庫가 借入을 할 때에는 性別로 總社員의 3分の 2 이상의 同意 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諸表 및 帳簿에 計上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서 “借入”이라 함은 稷金 및 賦金の 受入이외에 그 名稱·種類 및 方式如何에 불구하고 債務를 負擔하는 一切의 行爲를 말한다.

(1975. 7. 25 本條改正.)

第22條 (監督) 相互信用金庫는 財務部長官이 監督한다.

### 3. 4. 建設共濟組合法의 줄거리

(1963年 7月 31日)  
法律 第1382號)

改正 1969. 1. 28法2099號 1975. 4. 4法2754號

1980. 1. 4法3252號 1983. 12. 31法3709號

※ 全文 48條와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고 參考條

項만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組合員에게 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 등을 行하게 함으로써 組合員의 自主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하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5. 4. 4 本條改正)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組合員”이라 함은 建設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建設業者로서 組合에 出資한 者를 말한다.

2. “工事”라 함은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を 말한다. (1980. 1. 4 本號改正)

3. (1983. 12. 31 削除)

4. (1983. 12. 31 削除)

5. “入札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工事의 競争入札에 參加하는 組合員의 入札參加者로서의 義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6. “契約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に 대한 契約의 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980. 1. 4 本號改正)

7. “疵瑕補修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竣工 檢查權者 또는 同法 第38條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代表會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組合員이 都給 竣工한 工事의 施工중 設計圖書 기타 指示書에 違背된 事實로 인하여 발생한 疵瑕의 復舊 또는 改修할 義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983. 12. 31 本號改正)

8. “損害賠償保證”이라 함은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의 施工중 발생한 第3者의 被害에 대한 損害賠償을 組合이 保證함을 말한다.

9. “支給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國內外 金融機關 또는 保險機關에 대하여 組合員의 現金 支給등 債務의 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980. 1. 4 本號新設)

10. “差額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豫算會計에 관한 法令 및 發注者의 入札留



意書가 정하는 組合員의 差額保證金에 관한 債務의 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980. 1. 4 本號新設)

11. “下都給履行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受給人에 대하여 組合員이 下都給받고자 하거나 下都給받은 工事に 대한 義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980. 1. 4 本號新設)

12. “其他保證”이라 함은 第5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保證외에 組合員이 國家·地方自治團體로부터 認可 또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거나 기타 그가 행하는 事業과 관련하여 組合員이 부담하게 되는 財産上의 각종 義務履行을 組合이 保證함을 말한다. 이 경우 그 保證의 종류와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983. 12. 31 本號新設)

13. “保證債權者”라 함은 第5號 내지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保證으로 組合이 保證義務를 지는 相對方을 말한다. (1983. 12. 31 本號新設)

(1975. 4. 4 本條改正)

第8條 (事業) ①組合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1. 入札保證·契約保證·差額保證·疵瑕補修保證·損害賠償保證·下都給履行保證·支給保證 및 其他保證

2.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の 施工資金 기타 建設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3. 組合員이 工事代金으로 受領한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工사용機資材의 購買斡旋

4의 2. 組合員에 雇傭된 者의 福祉向上과 業務上 災害로 인한 損失을 補償하는 共濟事業

(1983. 12. 31 本號新設)

5. 組合員의 工事に 관련된 技術의 改善·향상 및 教育에 관한 事業

6. 組合員의 共同利用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7.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關聯事業에의 投資

8.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事業(1983. 12. 31 本號改正)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事業

②第1項第6號의 施設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

이 없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980. 1. 4 本條改正)

第8條의 2 (共濟規定)

第8條의 3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第11條 (民法 및 商法の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과 商法중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1975. 4. 4 本條改正)

第14條 (運營委員會) ①組合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運營委員會는 다음 11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總會가 組合員중에서 選任하는 者 6人

2. 建設部長官이 그 소속 公務員중에서 指名하는 者 2人

3. 財務部長官이 그 소속 公務員중에서 指定하는 者 1人

4. 大韓建設協會의 會長

5. 組合의 理事長

第30條 (資金의 運用)

第32條 (報告의 提出, 書類의 檢査等)

※ 建設部의 主된 所管業務

第33條 (理事長 및 監事의 就任承認取消)

※ 就任承認取消權이 建設部長官에게 있다.

3. 5. 電氣工事共濟組合法<sup>(1982. 11. 29)</sup>의 줄거리<sub>(法律第3570號)</sub>

※ 全文 54條와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다.

3. 5. 1. 法條文발췌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氣工事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組合員에게 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 및 資材의 購買斡旋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工事業界의 전진한 발전을 도모하고 組合員의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기하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組合員”이라 함은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에 의

- 하여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工事業者로서 組合에 出資한 者를 말한다.
2. “工事”라 함은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を 말한다.
  3. “發注者”라 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政府投資機關, 外國의 政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서 工事を 發注하는 者를 말한다.
  4. “保證金”이라 함은 入札保證金, 契約保證金, 疵瑕補修保證金, 損害賠償保證金, 支給保證金 差額保證金, 下都給履行保證金등 工事와 관련있는 義務履行에 필요한 保證金을 말한다.
  5. “入札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工事의 競爭入札에 參加하는 組合員의 入札參加者로서의 義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6. “契約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에 대한 契約의 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7. “瑕疵補修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組合員이 都給받아 竣工한 工事が 施工중 設計圖書 기타 指示書에 違反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瑕疵의 復舊 또는 改修할 義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8. “損害賠償保證”이라 함은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의 施工중 발생한 第3者의 被害에 대한 損害賠償을 組合이 保證함을 말한다.
  9. “支給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 國內外 金融機關 또는 保險機關에 대한 組合員의 債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0. “差額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發注者에 대하여 豫算會計에 관한 法令 및 發注者의 入札留意書가 정하는 組合員의 差額保證金에 관한 債務의 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11. “下都給履行保證”이라 함은 組合이 當初의 受給인에 대하여 組合員의 下都給工事に 관한 義務履行을 保證함을 말한다.

第6條 (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 ①組合의 出資金은 組合員이 出資한 總出資座의 額面總額으로 한다.

②組合의 總出資金은 5億원이상이어야 한다.

③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出資證券을 발행하여 出資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④出資 1座의 金額은 均一하게 하여야 한다.

⑤1組合員이 出資할 수 있는 座數는 總出資座數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限度내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⑥組合員의 出資는 全額 現金으로 納入하여야 하며, 그 納入金은 組合에 대한 債權과 相計하지 못한다.

⑦出資 1座의 金額 기타 出資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⑧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持分額을 限度로 한다.

第9條 (事業) ①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入札保證·契約保證·瑕疵補修保證·損害賠償保證·支給保證·差額保證·下都給履行保證 등 工事와 관련있는 義務履行에 필요한 保證
  2.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의 施工資金등 필요한 資金의 融資
  3. 組合員이 工事代金으로 受領한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工사용機資材의 購買斡旋
  5. 組合員의 工事に 相關한 技術의 改善·向上 및 教育에 관한 事業
  6. 組合員의 共同利用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7.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關聯事業에 的 投資
  8. 法令이 정한 바에 依하여 政府가 委託하는 關聯事業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定款이 定하는 事業
- ②第1項第6號의 施設은 組合員의 이용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5.2. 保證業務

#### (1) 保證對象工事

가. 電氣工事業法에 依한 電氣工事

나. 建設業法에 依한 建設工事

다. 電氣通信工事業法에 依한 電氣通信工事

라. 消防法에 依한 消防施設工事

마. 에너지 利用 合理化法에 依한 熱使用 機資材 設置工事

바. 위 各號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 組合員에 對하여는 電氣工事 뿐 아니라 위

호에 該當하는 모든 工事に 對해 保證 또는 融資가 可能하다.

(2) 保證種類와 內容

가. 入札保證: 工事の 入札參加時 예치하는 入札保證金에 對한 保證

나. 契約保證: 都給工事の 契約 체결시 예치하는 契約保證金에 對한 保證

다. 差額保證: 豫定價格의 85%未滿으로 낙찰한 工事の 差額 保證金에 對한 保證

라. 損害賠償保證: 工事施工中 發生한 第三者의 피해에 對한 손해배상의 保證

마. 瑕疵補修保證: 工事竣工時 예치하는 瑕疵補修保證金에 對한 保證

바. 下都給履行保證(入札, 契約, 瑕疵, 賠償, 先金給, 留保既成金): 원 수급인으로 부터 下都給을 받고자 하거나 下都給 받은 工事の 履行保證金에 對한 保證

사. 支給保證

1) 先金給支給保證: 발주자가 工事金の 일부를 先給할 때의 先給金에 對한 支給保證

2) 留保既成金支給保證: 발주자가 工事既成金支給時 留保한 留保既成金에 對한 支給保證

3) 支給保證의 保證 및 保證保險의 保證: 金融 또는 保險機關의 保證, 신용장 개설 또는 保證書 發給에 따른 債務에 對한 保證

4) 貸出保證: 金融機關의 施工資金 貸出金에 對한 支給保證

(3) 保證限度

組合員이 保證書를 發給 받을 수 있는 限度는 前年度 決算에 依한 座當 持分額을 基準으로 한 保證 種類別 배수로 하며, 各 保證別 배수는 다음과 같다.

(單位: 원)

保證別	'85年度座當利用持分額	倍數	'85年度座當保證限度	備 考
入札保證	108,000	10倍	1,080,000	差額保證 損害賠償保證 包含
契約保證	108,000	10"	1,080,000	
瑕疵補修保證	108,000	4"	432,000	
支給保證	108,000	4"	432,000	

※ '84年度 持分額에 依한 保證限度임.

“例 示”

5座, 10座, 50座, 52座, 102座를 出資한 組合員의 限度例示

(單位: 千圓)

保證別	5座	10座	50座	52座	102座
入札保證限度	5,400	10,800	54,000	56,160	110,160
契約保證限度	5,400	10,800	54,000	56,160	110,160
瑕疵補修保證限度	2,160	4,320	21,600	22,464	44,064
支給保證限度	2,160	4,320	21,600	22,464	44,064

※ '85年度 利用持分額에 依한 保證限度임.

(4) 保證手數料(電氣工事共濟組合)

保證別	區分	料 金
入 札 保 證		入札保證手數料에 限하여 保證手數料計算基準은 當該 入札豫定價를 推定으로 計算한다. ① 入札價 2千萬圓 以下일 境週 1,000圓 均一 ② 入札價 2千萬圓 以上일 境週 超過分×保證金率× $\frac{0.07}{100}$ +1,000圓
		契 約 保 證
差 額 保 證		年率 $\frac{1}{100}$
損 害 賠 償 保 證		件當 $\frac{1}{100}$
瑕 疵 補 修 保 證		年率 $\frac{1}{100}$ (3年超過時는 3年料率)
先金給支給保證 留保既成金支給保證 支給保證의 保證 保證保險의 保證 貸 出 保 證		年率 $\frac{1}{100}$
◎ 下都給履行保證의 手數料는 該當保證手數料와 同		
◎ 件當 最低手數料는 1,000圓임.		
◎ 保證手數料의 計算基準은 保證金額을 基準으로함 但, 入札保證은 當該 入札豫定價를 推定한 金額을 基準함.		

3.6. 大韓保證保險(株)의 概要

大韓保證保險(株)의 保證保險種目は 다음과 같다.

영 업 종 목	내 용	
1. 신원보증보험	1.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2. 각급 회사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3. 해외취업자에 대한 재정보증	
2. 이 행 보증 보험	입찰	각종 납품 계약, 건설공사 계약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	각종 납품 계약, 건설공사 계약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차액	각종 납품 계약, 건설공사 계약 등에 대한 차액보증금
	하자	각종 건설공사 계약, 납품 계약 등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	각종 전도금, 선금급 보증 또는 정부 계약 등에 대한 금전채무보증
3. 인·허가보증보험	1.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2. 임지훼손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3. 중고자동차매 알선업자 하자보증금	
4. 담세보증보험	1. 국세 담보보증 2. 관세 담보보증 3. 지방세 담보보증	
5. 할부판매보증보험	1. 자동차 할부판매 대금보증 2. 중기 할부판매 대금보증 3. 공작기계 할부판매 대금보증 4. 선박용엔진 할부판매 대금보증 5. 의료용기계 할부판매 대금보증 등	
6. 지급계약보증보험	1. 각종 금전 채무보증 2. 전도 자재 대가보증 3.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대리점 또는 특약점 등의 영업보증금 등	
7. 외국기관보증보험	외국기관의 건설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입찰, 계약, 하자, 지급 등의 보증금	
8. 리스보증보험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보증	
9. 사채보증보험	사채원리금 지급보증	
10. 크레디트카드 보험 및 가계 수표 보험	크레디트카드나 가계 수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여 회원 또는 예금주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 이행 보증보험의 종류

이행보증보험의 종류에는 이행(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이 있는데 내용은 각기 다음과 같다.

#### 가. 이행(입찰)보증보험

근거법규

정부계약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6조(입찰보증금)

보상하는 손해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기간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한다.

보험요율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외화표시 포함)에 대하여 0.21%

보험료 환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① 보험계약자가 입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불이용시)

②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③ 피보험자가 입찰공고를 철회할 때

나. 이행(계약)보증보험

근거법규

정부계약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계약보증금)

보상하는 손해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기간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계약기간 말일에 종료한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보 험 료

1. 건설공사 도급계약 보험요율

① 기본요율(1년 요율)

공사금액별	1 급	2 급	3 급
1,000만원 미만	2.09%	2.18%	2.27%
1,000만원 이상	1.71%	2.09%	2.18%
5,000만원 이상	1.42%	1.71%	2.09%
1 억원 이상	1.18%	1.42%	1.71%
5 억원 이상	0.95%	1.18%	1.42%

② 장기할인율

기 간 별	할 인 율
1년초과 2년까지 해당분	기본요율의 20% 할인
2년초과 3년까지 해당분	기본요율의 40% 할인
3년초과 4년까지 해당분	기본요율의 60% 할인
4년초과 해당분	기본요율의 80% 할인

③ 보험요율의 계산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요율을 월할로 계산한다.

.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1년 요율)과 해당초과년도요율 또는 초과월 해당년도요율을 월할 계산 요율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

○ 건설공사 급별 분류표

1 급	도로공사 건물부대공사 기타간이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신설, 개수, 복구, 유지공사</li> <li>○ 카벤, 벽, 지붕, 도장, 바닥깔기, 창, 문, 벽지, 샷다 등의 건축물 부착공사</li> <li>○ 토지개발시설, 토지개간(간척, 매립공사 포함) 유원지, 운동장, 공원, 골프코스, 테니스코트, 주차장, 정차장, 가설관람석, 온실등 시설공사, 조경공사</li> <li>○ 토지조성 배관 배선(전기, 가스, 수도시설 포함) 공사, 배수시설공사, 응벽설비공사 스프링클러 설치공사</li> <li>○ 방송탑, 조명장치, 신호기, 방수, 방열공사</li> <li>○ 기타 위와 유사한 공사</li> </ul>
-----	--------------------------	--

2 급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빌딩, 아파트, 학교, 공장, 병원, 공항빌딩등의 각종 건물의 건축공사 상·하수도 공사</li> <li>○ 에레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냉난방 환기설비공사</li> <li>○ 기계장치(플랜트 포함)의 조립 설치 공사(여과장치, 폐기물 처리장치, 휘발유 증류장치, 하수처리장치 등의 조립 설치 공사)</li> <li>○ 전기통신공사(송전선, 통신선, 부설공사등), 철골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착정공사, 푸울공사, 저수지공사, 탱크공사, 불림공사, 사천공사, 제방공사, 철도공사 궤도공사, 삭도공사(케이블카, 로프웨이, 스키 리프트 등)</li> <li>○ 기타 위와 유사한 공사</li> </ul>
3 급	1급 및 2급에 속하지 않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건설공사(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 등)</li> <li>○ 교량, 터널, 입체교차, 고가 육교공사</li> <li>○ 댐 공사, 항만공사(준설, 방파제, 잔교, 부두, 호안공사 등), 도크공사, 지하철공사, 해상, 해저 시설공사(해저케이블)</li> <li>○ 기타 위와 유사한 공사</li> </ul>

2. 건설공사 이외의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의 보험요율

○ 기본요율

기 본(4월까지)	0.76%
할 증(4월초과 매 1월마다)	0.19%

3. 외화표시계약요율

외자구매계약 또는 주계약이 외화로 표시된 계약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율을 적용한다.

보 험 가 입 금 액	보 험 요 율
미화 20만불 상당액까지	연 1.0%

미화 20만불 상당액초과 미화 100만불 상당액까지	연 0.8%
미화 100만불 상당액초과 미화 200만불 상당액까지	연 0.6%
미화 200만불 상당액초과	연 0.4%

보험료 환급

1. 환급사유

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3.7. 工業發展法第25條共濟事業團體에 關하여

※ 1986年 1月 8日 法第3806號 制定公布됨.  
第25條 (共濟事業團體) ①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共濟事業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1. 機械類의 品質保障과 瑕疵保證을 目的으로 하는 機械共濟事業團體

2. 建造중 또는 建造후 引渡건의 船舶이 事故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경우 그 損失에 대한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造船共濟事業團體

②共濟事業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事業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共濟事業團體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위 各條項에서 보다시피 統合法인 工業發展法 制定公布以前에 있었던 舊機械工業振興法第17條의 2〔共濟事業〕에 該當하는 것이 新法의 ②項이고, 舊造船工業振興法 第6條〔共濟事業〕에 該當하는 것이 新法의 ③項과 같으나, 瑕疵保證과 品質 및 性能保證에 限해 共濟事業을 하겠끔 母法에 明文化한 立法事例라 할 수 있다.

(參考로 적으면 建設業法, 電氣工事業 法等에는 母法上에 共濟事業條項이 없다)

## 4. 建設共濟組合의 1985年度 業務概況

### 4.1. 概況

1985年度는 先進諸國의 保護貿易主義 強化로 輸出 및 産業生産 등이 不振하여 經濟與件이 어려웠던 한 해였다.

특히 우리 建設業界는 國內景氣不振으로 인한 住宅建設의 減少와 海外建設景氣의 退潮로 자금 부족 현상을 誘發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國內 唯一의 建設業專擔金融機關인 當 組合은 業界의 資金需要 圓滑化를 위하여 盡力함으로써 諸般業務 實績이 全般的인 增加勢를 나타냈다.

즉, 保證業務는 總 254,736件에 4兆 4,814 億 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4.2% 金額은 18.9% 增加한 實績을 나타내었고(표-4.1. 要參照)融資業務는 總 4,065件에 4,340億 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1.6% 減少하였으나 金額은 5.7% 增加한 實績을 나타내었다.

이를 業務別로 細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4.2. 保證業務

#### 가. 入札保證

入札保證은 總 184,039件에 3兆 557 億 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2.3% 金額은 13.2%가 增加되었는데, 이는 當 組合 保證對象發注者가 擴大된데에 基因한 것이다.

#### 나. 契約保證

契約保證은 總 26,622件에 4,965 億 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2.0% 減少한 반면 金額은 24.6%나 增加하여 單位當 工事의 大型化 現象을 나타내었다.

#### 다. 瑕疵補修保證

瑕疵補修保證은 總 29,693件에 1,733 億 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13.2% 金額은 17.4%가 增加되었는데, 이는 當 組合 保證對象發注者가 擴大된 外에도 共同住宅 瑕疵補修保證의 利用이 活性化된데에 基因한 것이다.

#### 라. 支給保證

先金給支給保證은 總 3,733 件에 4,373 億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27.7% 金額은 31.3% 增加되었는데 이는 建設工事に 대한 先金給制度의 定着化에 基因된 것이다.

한편 留保既成金支給保證은 總 1,264 件에 1,015 億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11.1% 減少하였으나 金額은 14.2% 增加되었다.

다. 其他

損害賠償保證은 借款工事物量の 減少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25.4% 金額은 42.6% 減少한 總 211 件에 12 億원이었으나, 差額保證은 建築工事物量確保를 위한 受注競争으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33.0% 金額은 117.1% 增加한 總 136 件에 1,435 億원이었으며, 下都給履行保證은 下都給制度의 定着化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59.9% 金額은 68.3% 增加한 總 5,404 件에 421 億원이었다.

한편, '84.11.20 字로 施行된 認·許可保證, 住宅建設敷地買入保證, 臨時電力需用豫納保證은 總 634 件에 258 億원의 實績을 나타내어 그 利用이 活性化되고 있다.

4.3. 融資業務

가. 施工資金 및 어음割引

施工資金은 先金給制度의 定着化에 따른 融資對象工事の 相對的 減少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24.3% 金額은 3.7% 減少한 總 479 件에 1,075 億원이었으나, 어음割引은 同業務의 定着化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15.6% 金額은 26.6% 增加한 總 89 件에 500 億원 이었다.

나. 運營資金

運營資金은 總 3,497 件에 2,764 億원으로서 前年에 比하여 件數는 2.3% 金額은 6.6% 增加하였다. 이는 海外建設景氣의 沈滯에 따른 業界의 資金事情 惡化로 資金需要가 增加됨과 동시에 當 組合의 運營資金 融資 制限事項이 緩和되어 運營資金 利用可能額이 增加한데에 基因한 것이다.

4.4. 保險手數料 및 貸出金利子 收入

總保證手數料收入額은 5,124 百萬元으로 前年對比 48.6% 增加하였으며, 貸出金利子は 9,632 百萬元으로 前年對比 13.2% 增加하였다.

표-4.1. 建設共濟組合의 保證種類 및 保證實績表

(單位: 千圓)

區分 保證種別	'84 保證實績		'85 保證實績		前年比增減率(%)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入札保證	179,867	2,698,621,055	184,039	3,055,703,713	2.3	13.2
契約保證	30,241	398,536,878	29,622	496,571,956	△2.0	24.6
瑕疵補修保證	26,229	151,048,423	29,693	177,379,207	13.2	17.4
差額保證	102	66,121,092	136	143,520,990	33	117.1
損害賠償保證	283	2,187,222	211	1,255,746	△25.4	△42.6
先金給支給保證	2,923	332,980,273	3,733	437,352,268	27.7	31.3
留保既成金支給保證	1,421	88,969,925	1,264	101,572,630	△11.1	14.2
下都給履行保證	3,380	25,062,093	5,404	42,173,349	59.9	68.3
認許可保證	5	318,694	95	9,444,130	1,800.0	2,863.4
住宅建設敷地買入保證	5	3,987,866	16	13,100,114	220.0	228.5
臨時電力需用豫納保證	4	18,043	523	3,331,629	12,975.0	18,364.9
合計	244,460	3,767,851,564	254,736	4,481,405,732	4.2	18.9

5. 技術共濟組合設立提案의 主要內容

5.1. 全文 57 條와 附則으로 構成되는 法案을 提案한다.

5.2. 建設共濟組合法 및 電氣工事共濟組合法와 같은 性格에서 判異한 特色은 技術士個人에 의한 信用稷과 信用融資를 받을수 있다는 點인 것이다.

더우기, 技術士信用保證保險과 技術士賠償責

任保證保險은 新設하는 特殊保證業務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5.3. 新設되는 組合의 基本財産은 政府補助없이 技術士와 技術用役業體의 出資만으로 形成한다.

(1) (社) 技術士會의 定款에 따라 平生會員이 拂込한 加入金(現在, 銀行에 預置中에 있는) 約 6千萬원을 出資한다.

(2) 技術士會員中 平生會費를 拂込치 않은 會員은 各其 20 口座씩 出資케 하는 同時에, 現在까지 未加入한 技術士資格所持者도 技術士會 加入과 口座加入토록 勸誘하여 出資額을 約 4千萬원 以上 計上토록 한다.

※ 1986. 6. 30 現在. 資格證所持者는 4,459 名이나 技術士會加入者는 2,567名이고, 其中 平生會費拂込者는 381名이다.

(3) 本法公布時에 國庫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에 預置된 各種保證金(技術用役業體의)中 現金만 出資한다.

(4) 科技處에 技術用役業體로 登錄한 業體(1985. 12. 31. 現在) 271個社가 約 1億원 以上 現金 出資한다.

(5) 出資額은 初年度 約 2億원 以上の 資本金으로 出發하고, 앞으로 繼續해서 事業收益金으로 增資토록 한다.

5.4. 外國機關保證保險이 技術用役業務推進上 內外에서 必要할 경우 이에 對한 措置도 條文化해서 可能하게 한다.

5.5. 機構簡素化를 위해 當分間은 서울本社에서만 營業行爲를 하고 地方은 on-Line 을 가진 既存銀行窓口와 팩시밀을 利用해서 全國을 카바한다.

5.6. 政府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에서 技術用役契約上의 約款에는 技術共濟組合法에 의한 保證保險業務와 關聯을 맺도록 한다.

## 6. 맺는 말

技術士會員으로서 別로 큰 惠澤을 받지 못하

고 있다고 不平不滿을 或是하는 者나 또는 資格保有者로서 아직까지 入會하지 않고 있는 技術士에게는 朗報라 할 수 있는 「技術共濟組合設立提案」에서 보다시피, 앞으로 會員을 위한 새로운 制度的인 信用金融機關을 갖게 되리라는 希望을 갖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技術士의 社會的地位向上促進과 經濟的 優待等의 一環이 될 수 있는 이 設立案은 貯蓄增大策의 一翼도 되므로 遲滯없이 實現되기를 當局의 善處있기를 渴望하는 바이다.

共濟事業設立에 關한 母法條文化가 必稔한 것은 86年 1月初에 公布된 工業發展法의 本보기를 우리는 銘記해야 한다고 筆者는 느끼고 있으며, 舊時代의 立法體系는 二千年代를 指向하기 위해 再整備되어야 할 것이다.

## 7. 主要參考資料 및 文獻리스트

7.1. “法典”, 1986年版, 趙相元/編著, 玄岩社發刊

7.2. “業務統計年報”, 1986年版, 建設共濟組合 1986年 5月發刊(214面)

7.3. “技術用役實績總覽”(1973~1983)(科學技術處登錄業體) 韓國技術用役協會 1984年 7月 20日發刊(258面)

7.4. “1985年度技術用役實績總覽(科學技術處登錄業體) 韓國技術用役協會 1986年 5月 31日發刊(353面)

7.5. 信用保證基金(Korea Credit Guarantee Fund)의 各種案內冊子

7.6. “國家技術士法の 草案” pp. 43~51, 기술사誌 Vol. 19, No. 1 MAR. 1986 金洵根,

7.7. “科學技術人財保護法提案” pp. 1~9, 기술사誌 Vol. 19, No. 2 JUNE. 1986 金洵根

7.8. “科學技術人財保護法の 草案” 金洵根